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21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김영배·박홍배·박선원

김동아 · 김영호 · 김태년

문금주 • 민형배 • 한병도

전현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 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한다.

④ 제10조를 위반하여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과태료) ① ~ ③ (생	제1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u> <신 설></u>	④ 제10조를 위반하여 지체 없
	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
	리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④</u> 제1항부터 <u>제3항까지</u> 에 따	<u>⑤</u> 제4항까지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부과 · 징수한다.	